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9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어기구·박균택·주철현
이개호·서삼석·조인철
문금주·박수현·김태선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을 “그 직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생략)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u>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그 직무상</u> ----- ----- ----- 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u> <u>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u> <u>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u>

<u>③ · ④</u> (생략)	3. 「<u>농지법</u>」 제54조에 따라 <u>농지의 소유 · 거래 ·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u> <u>④ · 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